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86호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이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유관 기관 및 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백승규・곽은정・김원일・박영주・이우완 이정희・장병운・전홍표・진형익・홍용채 황점복 의원(11명)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유관 기관 및 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안정”을 “경영안정 등”으로, “시행할”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원시 소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 경영안정 등---------- ---------- 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원시 소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참고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 법 제12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착한가격업소”란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의2(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 교육
2. 업종전환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3(교육 이수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지원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제10조(특별지원) 시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2.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려면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매월 지원한 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2.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제24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